

201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

◦ 이 내용은 2010년도 달라지는 주요시책을 정리한 것입니다.

2010년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1. 산지일시사용제도 도입	<신 설>	○ 지목변경 없이 산지를 산림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 후 다시 산림으로 환원하는 경우를 기존의 산지 전용제도와 구분하여 간소하게 규율하기 위하여 “산지일시사용”제도 도입	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, 제15조의 2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2. 보전산지 등에서 진입로시설 허용	○ 보전산지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 설치시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이 불가 - 1년 미만의 임시진입로 시설만 허용	○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 중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 설치를 허용	산지관리법 제10조, 제12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. 준보전산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	○ 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 및 전용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	○ 전용할 산지 중 보전산지(임업용산지)가 20% 미만이고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인 경우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 및 전용허가 기준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적용	산지관리법 제18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4.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적 부과유예	○ 준보전산지에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시설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00% 감면 - 다만,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부과	○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속하는 준보전산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2011년 6월 30일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함	산지관리법 제19조의3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5. 장기간 타용도 사용 산지의 지목변경 허용	<신 설>	○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전용허가·신고 등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 - 불법산지전용 사실 신고를 의무화함	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6. 산림경영대행 범위 확대	○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경영대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하여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경영대행	○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,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, ○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7.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	○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중 버섯류·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<신 설>	○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약용수종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 (품목확대) ○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농어업인이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을 요존국유림안에서 재배 할 수 있도록 신설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8. 해외산림투자 유자지원 확대	○ 해외산림투자 지원 사업에 조림 및 육림, 벌채 및 가공 시설 사업비만을 지원	○ '10년부터 해외산림투자 유자지원 대상 사업에 해외조림지 및 신규조림을 위한 토지 매수 비용과 조림지 임대료를 추가하여 지원 - 매수가격의 70% 이내로 최대 20억원 까지 지원 - 매수대상 토지는 10년 미만의 조림지, 3년 이내에 신규로 조림할 토지이며 조림지 임대료를 포함함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'10.1.1)
			산림청 국제협력과 (042-481-4088, 4089)
9.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	○ 연중 입장료 징수	○ 동절기(12월-3월) 입장료 폐지	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요령 ('10.3월 예정)
			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211)
10. 산불 과태료 부과 현실화	○ 과태료 부과 금액 -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(100만원) -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(50만원) ※ 근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(과태료)	○ 과태료 부과 금액 하향 조정 -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(50만원) -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 간 자(30만원)	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 ('10.3.10)
			산림청 산림방지과 (042-481-4252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11.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 지정	○ 지정단위 :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의 읍·면·동	○ 지정단위 :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으로부터 3km 이내의 행정 동·리	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9조 ('10.1월 시행예정)
			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76)
12. 바이오순환림 조성 민유림 확대	○ '09년까지 국유림에만 바이오 순환림 예산을 반영하고, 민유림은 경제수조림 예산으로 추진 - '09년 국유림 200ha, 10억원	○ '10년부터 민유림에 바이오순환림 조성 예산 별도 반영 - 민유림 5,000ha, 179억원 - 국유림 1,000ha, 51억원 - ha당 510만원(국고 70%, 지방비 20%, 자부담 10%) - 전면적 비료주기로 생육촉진 - 불량림 벌채비용 설계반영 가능 ※ 종자산지, 조림실행자 및 사후관리 이력을 '관리대장'에 기록유지	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185, 4183)
13. 덩굴류 제거 조기 추진으로 건강한 숲 조성	○ 풀베기 작업이 끝나는 9월 부터 덩굴류 제거 추진 - 9월 한 달을 집중제거 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	○ 봄철 나무심기가 끝나는 5월부터 조기 추진 - 조림지, 도로변 덩굴류 집중제거 - 특히 '09년 9~10월에 제거 후 재발생한 덩굴류는 반복 제거 ※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최대한 활용	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185, 4183)
14. 백합나무 생산 확대	○ 백합나무 종자를 노지파종 (350본/kg)하여 실생묘 생산	○ 백합나무 종자 온실파종(861본/kg) ○ 백합나무 클론임업 도입(300천본생산)	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189)
15. 양묘시업기준 변경	○ 노지묘 파종 - 소나무 26.6g/m ² - 해송 32.1g/m ² ○ 용기묘 파종 - 소나무 2-3립/혈	○ 노지묘 파종 - 소나무 13.3g/m ² - 해송 16.0g/m ² ○ 용기묘 파종 - 소나무 2립/혈 - 낙엽송 4립/혈 - 편백 14립/혈	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18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16. 중요정책 자문회의 운영	○ 산림사업용 중요가격 자문	○ 중요 정책 자문회의 운영(수시)을 통해 중요가격 및 묘목규격 등 중요정책 자문	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189)
17. 산림유전자원 관리 강화	<신 설>	○ 유전자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책임기관별로 실질적인 산림유전자원 수집·보존·평가·이용 활성화	농업유전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('08.8.4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189)
18. 도로변 산림 숲가꾸기	○ 도로변 가시권지역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 재실행 기간 - 최초 사업 실행 후 5년이 경과해야 재실행 가능	○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 반복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 - 풀베기, 덩굴류제거, 어린나무가꾸기, 숲아베기 등 일련의 숲가꾸기와 관련된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임지여건, 수목 성장상태, 경관유지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반복 실행	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(훈령, '09.8.2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218)
19. 숲아베기량 상향	○ 정량간벌 숲아베기량 기준 - 수종별 경급별로 '간벌후 입목본수기준' 적용	○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를 위하여 숲아베기량 기준 상향 - 인공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'간벌후 입목본수기준'의 2단계 높은 경급의 본수 범위 내에서 숲아베기량을 적용 - 천연림의 경우 작업장 및 산물수집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수대비 최대 50% 범위 내에서 숲아베기량을 적용	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(훈령, '09.8.2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218)
20. 숲가꾸기 패트룰	○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시범 운영 * 숲가꾸기 패트룰 : 도로변 덩굴류제거, 주거지·농경지 피해목 제거 등 다양한 산림 현장 민원 전담 처리반	○ 5개 지방산림청에 1개단씩 확대 운영 -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력·예산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	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21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21. 공공산림가꾸기 기술인부 수당	○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부에게 기술수당을 별도 지급 - 인부임 : 45천원(인부임 40천원 + 기술수당 5천원) - 단, 실제 근무한 날에만 지급하고 유급휴일(주휴일· 연차휴일)과 교육훈련기간 에는 미지급	○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인부에게 기술수당을 인부임에 포함하여 통상임금으로 지급 - 인부임 : 45천원 - 실제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유급 휴일 (주휴일·연차휴일)과 교육훈련기간에도 일률적으로 지급	사회서비스 일자리추진지침 (’10.1.1)
			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218)
22. 산림서비스 사업 내용 변경	○ 산림서비스도우미 : 8개 사업 - 숲해설가, 숲생태관리인, 산지전용모니터링 등	○ 산림서비스도우미 : 8개사업 - 산지전용모니터링사업은 폐지하고, 학교숲코디네이터 신설	2010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(’10.1.1)
			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(042-481-4039)
23.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확대	○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- 방부처리 목재, 목탄, 목초액 (3품목)	○ 임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- 방부처리 목재, 목탄, 목초액, 건조 제재목(4품목) * 2011년부터는 합판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마루판이 포함되어 8품목으로 확대	임업 및 산촌 진흥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(’10.1.1)
			산림청 목재생산과 (042-481- 4204, 4205)
24. 임업기계장비 보급 확대	○ 임업기계장비보급 예산 지원 - 지방청	○ 임업기계장비보급 예산 지원 - 지방청, 지자체	2010년도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(’10.1.1)
			산림청 목재생산과 (042-481- 4187, 4188)
25. 임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강화	<신 설>	○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기계에 대하여 2년마다 재신고토록 지침개정	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(’09.11.)
			산림청 목재생산과 (042-481-4187, 418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26. 공익용산지 지정 대상에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	○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 사방지의 산지 등이 포함	○ 공익용산지 지정대상에서 사방지의 산지를 제외함	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27. 산지관리기본계획 제도 도입	<신 설>	○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 도입 - 10~11년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- 12년 최초 계획수립	산지관리법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28.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위한 지질·토양의 조사·탐사 시설 허용	○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국방·군사시설의 설치 등 허용행위에 한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함	○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위한 지질·토양의 조사·탐사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함	산지관리법 제10조 제10호 제12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29. 산지전용·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	○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	○ 산지전용·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	산지관리법 제11조 제2항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0. 보전산지에서 채석을 위한 탐사시추시설을 허용	○ 보전산지에서는 국방·군사시설의 설치 등 허용행위에 한하여 산지전용이 가능함	○ 보전산지에서 가능한 허용행위에 채석을 위한 탐사·시추시설을 추가함	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1. 산지관리업무 지방 이양	○ 산지전용신고 등의 업무를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운영하면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음	○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운영중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	산지관리법 제15조 등 21개 조문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32.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	○ 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와 임산물의 생산시설 등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허용함	○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 지목변경을 허용하고,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제한함	산지관리법 제21조의2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3. 지역지구 등 변경 해제절차 일원화	○ 용도지역의 변경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, 보전산지의 해제는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	○ 용도지역 변경절차와 보전산지 해제절차를 연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	산지관리법 제22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4. 토석매각 계약해제 및 무상양여 취소 규정 보완	○ 국유림의 경우 토석매각 및 무상양여와 관련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규정만 있고 토석채취의 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음	○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한 경우에도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외에 사유림의 경우와 동일하게 토석채취의 중지, 시설물의 철거, 산지로의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, 계약해제 등의 사유를 추가함	산지관리법 제36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5.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규정 신설	○ 토석채취지를 복구하는 경우 채석시 발생하는 폐석분 토사와 되메우기에 적절한 흙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	○ 산지전용,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도록 함	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6. 수수료 면제조항 신설	○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는 자는 예외 없이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음	○ 산지전용허가,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·공공용 시설은 수수료를 면제함	산지관리법 제50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7. 과태료 부과규정 정비	○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사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규정이 없음	○ 산지전용허가 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	산지관리법 제57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38.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위원회 자문 사항 추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할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-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- 시범림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자문을 구할 사항으로 “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”을 추가 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39.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제도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은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경영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40. 국유림의 재구분 허용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」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41. 국유림 확대계획 수립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유림의 확대목표와 기본방향, 국유림 확대의 범위,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등이 포함된 국유림 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 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42. 국유림 대부료 등의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대부료등이 전년도 연간 대부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조정산식에 따라 조정 * 10%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 산식(시행령)에 따라 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전년도 대부료등보다 9%이상 증가한 때에는 9% 증가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함 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('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43. 숲가꾸기 산물의 무상양여 허용	<신 설>	○ 용재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 어업인 등에게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 으로 공급하려는 경우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허용	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(’10 하반기)
			산림청 국유림관리과 (042-481-4091)
44. 산림휴양시설 확충	○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, 숲속의 집 등 신규 또는 보완공사 위주로 휴양시설 확충	○ 휴양시설 신규조성 중심에서 야영 및 부대시설 조성으로 전환 - 야영수요의 급증에 따라 야영장 및 샤워장, 화장실 등 부대시설 조성 확대 - 모든 야영시설 인터넷 예약제 전환	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(’10. 2월)
			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211)
45. 자연휴양림 시설 타당성 평가	○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수립 후 별도로 시설타당성 평가 실시	○ 자연휴양림지정 및 조성 체계 개선으로 효율성 제고 - 사전 환경성검토 항목과 중복되는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제도를 폐지 -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시행규칙상의 ‘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’를 보완하여 ‘자연휴양림 지정 타당성평가’로 전환	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5조 (’10. 6월 예정)
			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211)
46. 치유의 숲 정의 및 조성근거 마련	<신 설>	○ 치유의 숲 개념 정립 - 치유의 숲이란 인체에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 ○ 치유의 숲 조성근거 마련 - 산림청장, 공·사유림의 소유자 등에게 치유의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- 공·사유림의 소유자가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비의 보조 또는 융자 가능	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. 제20조 (’10. 6월 예정)
			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8869)
47. 숲길조성 확대	○ ’07년부터 숲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체계적인 관리지침 미비	○ 다양한 자연체험형 걷기 문화 창출을 위한 숲길의 체계적인 조성 - 자연친화적인 숲길조성·운영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- “전국을 잇는 숲길 네트워크 구축”을 위한 관리주체(국가, 시도, 시·군·구)에 따른 숲길 표준모델 개발·보급	산림 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(’10.하반기)
			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10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48. 산림문화자산의 근거 마련 및 실태 조사 추진	<p><신 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립수목원에서 국유림을 대상으로 시범적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문화자산의 정의 및 지정·관리 근거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·경관적·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·무형의 자산 -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를 제외한 산림문화자산을 지정·고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○ 산림문화자산 실태조사를 5개 지방산림청으로 확대 	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. 제29~31조 ('10. 6월 예정)
			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4211)
49. 사업명칭변경 (사업통폐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임산물유통구조개선 ○ 산림소득 증대사업 ○ 전통산지약용식물소득원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사업으로 통폐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세부사업을 통폐합하여 지원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8)
50. 청정임산물이용 증진(①임산물 유통지원)	<p><신 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명품브랜드화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격요건 : 지리적표시 등록임산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(HACCP) 운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HACCP제도 지원사업비 : 100백만원 ○ 명품브랜드화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격요건 : 지리적표시등록임산물 및 친환경인증임산물 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6)
51. 청정임산물이용 증진(②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- 임산물생산기반 정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, 표고, 대추는 지원 제외 <p><신 설></p>	<p><삭 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추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추가 지원 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8)
52. 청정임산물이용 증진(②산림작 물생산기반조성 -산림작물생산 단지조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등기부등본(토지)상 근저당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 ○ 개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밤, 표고, 대추는 지원제외 <p><신 설></p>	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추생산을 위한 비가림시설 추가 지원 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'10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8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53. 청정임산물이용 증진(③전통산지 약용소득원화- 산약초타운조성)	○ 사업추진방식(산약초타운조성) : 단년도 사업	○ 사업추진방식(산약초타운조성) : 2개년도 - 1차년도 : 설계·감리, 기반조성 - 2차년도 : 체험시설, 테마공원 등 조성사업 * 사업규모가 대규모임을 감안하여 단년도 사업에서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방식을 개선함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’10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8)
54. 산림경영계획 작성지원 (보조 지원단가 상향조정)	○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 지 원단가 - 10,800원/ha	○ 산림경영계획작성 보조 지원단가 - 11,800원/ha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’10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1)
55. 이차보전 정산 시기 조정	○ 이차보전 정산신청은 분기 별로 실시	○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차보전 정산시기를 분기별에서 2개월 단위로 조정	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(’09.9.28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1)
56. 이차보전 정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 도입	○ 이차보전 정산시 대출기관이 제출한 기준금리 및 정산 금액에 대한 확인후 집행 하고 있으나, 검증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미흡	○ 이차보전 정산절차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시스템 도입. - 이차보전 신청시 회계법인의 검증 보고서 제출의무 부과 - 기준금리 산정방식 개정을 통한 금융 기관 자금투입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	임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(’09.9.28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1)
57.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	<신 설>	○ 전문임업인을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산림경영 현장여건에 맞는 기반 시설 및 경영장비를 지원 - 2010년 총사업비 32억원 - 지원조건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 30%) - 대상 : 독립가, 임업후계자, 신지식 임업인중 30ha이상 산림소유자 - 지원금액 : 개인별 사업비 1억원 이내	2010년도 농림수산 사업시행지침 (’10.1.1)
			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191)
58. 수목원조성 예정지 지정	<신 설>	○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수목원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음 - 수목원조성예정지는 5년 이내로 지정 할 수 있고 1회,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	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을 제6조의 2 (’09.8.9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목원조성예정지의 전부 일부가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제·변경할 수 있음 - 수목원조성 예정지 안에서는 산지·농지의 전용, 수목벌채, 임산물의 굴취·채취, 건축물의 건축 등 일부 개발행위를 제한 	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8)
59. 청원산림보호직원 임용경력·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은 21세 이상 45세 이하 ○ 청원산림보호직원, 산림관계 공무원, 군에 복무한 경력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상한 연령 폐지하여 임용자격을 「공무원 임용 시험령」에 맞추어 18세 이상으로 조정 ○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국가기관·지자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인정 ○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무를 명확히 정함 	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을 제5조 (’09.10.7)
			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7)
60. 산림보호구역의 재정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 산림보호구역은 보안림 6종(수원함양, 생활환경, 경관, 토석방비, 비사·해안방비, 어촌)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1종으로 구성 ※ 근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(보안림의 지정),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(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지정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보호구역의 지정·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보안림(6종)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(1종)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※ 산림보호구역 : 5종(수원함양, 생활환경, 경관보호, 재해방지보호, 산림유전자원보호) 	산림보호법 제7조 (’09.6.9)
			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(042-481-4247)
61. 학교숲 조성·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숲 조성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대행하며, 학교당 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만원을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숲 조성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며, 학교당 6천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을 1년에 지원 	학교숲 조성사업지침
			산림청 도시숲경관과 (042-481-4238)
62. 학교숲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숲의 사후관리 강화, 활용도 제고 및 산림분야 일자리 제공을 위한 학교숲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(신설) 	학교숲 코디네이터 지침
			산림청 도시숲경관과 (042-481-4238)
63. 산불진화단 설치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중진화대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·운영하며, 산불진화,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지휘·통솔 등 임무 수행 	산림보호법 제41조 (’10.3.10)
			산림청 산불방지와 (042-481-4257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64. 산불경보별조치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불경보별 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(등산로 폐쇄 구간)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산통제구역 : 전체 산림 면적의 20% 이상~ 50% 이상 - 등산로 폐쇄 : 전체 등산로의 20%이상 ~ 80%이상 ※ 근거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의3(산불경보의 발령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불경보별 단계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(등산로 폐쇄구간)에 대한 관리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- 공무원 담당지역 순찰 및 단속강화 -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불놓기허가 중지,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등 	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('10.3.10)
			산림청 산림방지고 (042-481-4255)
65. 대형산불 및 중소형 산불의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형산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해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○ 중·소형 산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형산불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※ 근거 :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(대형산불의 범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형산불의 기준을 상향 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 ○ 중·소형 산불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형산불에 해당되지 않는 산불 	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5조 ('10.3.10)
			산림청 산림방지고 (042-481-4257)
66. 산불전문조사반 구성·운영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을 진화한 후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·운영 	산림보호법 제42조 ('10.3.10)
			산림청 산림방지고 (042-481-4259)
67. 산불방지에 대한 평가 분석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림청장이 대형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문제점, 개선방안 등을 평가·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시 시정조치하거나 보완 요구 	산림보호법 제45조 ('10.3.10)
			산림청 산림방지고 (042-481-4259)
68. 물가두기 사방댐	<신 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불 조기진화를 위한 헬기 취수원 확보와 재해예방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'물가두기 사방댐'시설 신규 추진(10개소) 	'10년 예산내역서
			산림청 치산복원과 (042-481-4271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
			관계 부서
69. 소형임도 시설	○ 소형임도시설 시범사업으로 '09년 3km 실행	○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등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형임도(작업도) 시설사업을 확대 추진(305km)	'10년 예산내역서
			산림청 치산복원과 (042-481-4275)
70. 황폐지 실태조사	<신 설>	○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고 사업 수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“황폐지 실태조사” 실시	사방사업법 제3조의 3 (’09.3.26)
			산림청 치산복원과 (042-481-4271)
71. 테마임도 시설	○ 농특회계 임도시설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테마임도 시설	○ 테마임도 시설은 기존사업(신설·구조 개량)에 포함하여 실행	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규정 (’09.2.5)
			산림청 치산복원과 (042-481-4275)
72. 소나무림 재해 저감사업	○ 산청 등 9개소에서 시범사업 으로 추진	○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추진 - 5천ha, 45억원	'10년 예산내역서
			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69)
73. 소나무류 조림· 육림 금지거리	○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으로부터 6km 이내의 지역	○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 이내에 해당되는 동·리의 전체구역	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(’10.1월 시행예정)
			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076)
74. 생활침해형 산림 병해충 민간진단 처방 컨설팅	○ 시범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직접추진 - 800개 학교, 90백만원	○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추진 - 1,670개 학교, 190백만원	산림보호법 제24조 (’09.6.9)
			산림청 산림병해충과 (042-481-4269)



<http://www.forest.go.kr>